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인 : 김신연(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8)외 36명
- 나. 소개의원 : 한 선 재
- 다. 접수일자 : 2005년 3월 18일
- 라. 회부일자 : 2005년 3월 18일
-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통·반장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만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 통·반장 연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할 소지가 많고 연임제한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이유에 비추어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의 제5조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해 주시기를 청원함.

3. 취지 설명요지(취지설명 : 한선재 의원)

- 2001. 1. 12 조례 제1808호로 부천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조례개정으로 통반장의 경우도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통반장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주민 직선제하에서는 통반장의 장기적 연임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항이 거의 없으며
- 또한 통·반장이 되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주민이 연임 제한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할 소지가 많고 연임제한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 그리고 현행 부천시 통반설치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례상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추어 볼 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의 통반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시켜 달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구도시는 통장에 대한 경쟁이 심하지 않으나 신도시는 심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 의견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p> <p>○ 청원을 받아서 시 집행부로 이송해도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p> <p>○ 이번 통장설치조례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p> <p>○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합니까?</p> <p>○ 통장 임무가 전출입확인, 민방위 고지서 배부, 거주자 사실증명원, 적십자회비 납부독려 외에 어떤 임무가 있나요?</p> <p>○ 설문조사결과 63% 정도가 현행 조례유지가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된다고 볼 수 있죠?</p>	<p>○ 네, 그렇습니다.</p> <p>○ 네, 그렇습니다.</p> <p>○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의정모니터, 민원모니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면조사는 시·구·동 민원실을 통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7,876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p> <p>○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지나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 추진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p> <p>○ 반상회를 개최 주민들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거나, 전시에 주민제도 홍보, 생필품 배부, 민방위 하부조직 통괄하는 임무 등이 있습니다.</p> <p>○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각동 대부분 단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며 부천시 자문변호사에게 헌법 제10조 관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p> <p>○ 통장 선출시 통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지원경비 등 표준문안을 만들어 명시해서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p> <p>○ 만약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위헌소지가 나오면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p> <p>○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취지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면 조례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는데?</p>	<p>○ 자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p> <p>○ 통장에 대한 자격등 모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자료를 만들어 교육을 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p> <p>○ 만약 그렇다면 개정에 대한 재논의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p> <p>○ 본 조례에 대해 1회에 걸쳐 개정이 있었고 2회에 걸친 개정 논의가 있는 등 세번에 걸쳐서 심층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부천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 의견서 1부.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부천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의안 번호	제366호
----------	-------

부천시의회

건명	부천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		
청원인	주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5번지 현대상가 301호	
	성명	김신연 등 37인	
소개의원	한선재 의원		
소개 년월일	2005. 3. 18	차리년월일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5. 3. 24)

부천시 통·반장 연임제한규정 폐지 청원에 대한 의견

현행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은 통·반장의 장기적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 1. 12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시와 행정환경이 비슷한 경기도내 및 타시도의 시·군도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2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주는 것이 주민의 민주 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시 정부에서 2005. 2. 14 ~ 2. 28까지 15일간 부천시민 9,135명을 대상으로 통반장 연임제한 및 연령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76명 62.8%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임. 따라서 청원을 제기한 통장들의 의견에도 공감은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행 부천시통반설치조례는 통·반장의 임무, 기능, 위·해촉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 정부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정부 주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2005년 3월 24일

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

청원서

청원인 김 신 언 외 36명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8
연락처 019-357-9236

제 목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1.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의 신설이유

부천시의회는 2001. 1. 12. 조례 제1808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당시 제안이유는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2. 통·반장의 연임제한규정의 부당성

가. 2001. 1. 12. 조례 제1808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반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할 당시의 제안이유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통·반장의 경우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통·반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여 거의 모든 통·반장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주민이 직선으로 통·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당해 통·반 구역내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를 통·반장으로 선출하여 2년 동안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는 2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다시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다른 새로운 인물을 통·반장으로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도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다시 통·반장으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비하여 통·반장이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은 주민직선제하에서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의 기회를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다. 설령, 연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들

동·반의 차원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자신들을 위하여 봉사할 동·반장을 선출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일 것이며, 주민의 직선선출에 의하여 연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달성하려고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동·반장들은 다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기 위하여 더욱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주민에게 더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장이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경우에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다시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민은 다시 그 사람을 동·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라. 부천시동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동장이 동·반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만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불 여지가 있습니다. 동장이 동·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차라리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그 신설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취지가 거의 의의가 없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도 연임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에 반할 소지가 많고 주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볍게 보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직접 동·반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며,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동·반장으로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 주는 것이 주민의 민주의식을 향상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동·반장이 되려고 하는 주민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동·반장이 되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주민이 연임제한규정에 의하여 동·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 할 소지가 많고, 공무원에 준하는 동·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공무담임권도 제한당하게 되고, 동·반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 직업의 자유도 제한될 여지가 있고, 또한 연임제한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너무 큽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비추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의 제5조 제4항 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청원서부분 | 2통 |
| 1. 청원소개의견서 | 3통 |

2005. 3. 18

위 청원인대표 김신연외 1,100명

부천시의회 귀중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통·반장 연임 제한규정 폐지청원		
청원인	주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5. 현대상가 301	
	성명	김신연	주민등록번호 600125 - 1538215
소개의원	한 선 재 		
소개년월일	2005. 3. 17.		

▶ 소개의견

- 통장 연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민을 위하여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만 연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주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 주민이 직접 통반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 주는 것이 주민의 민주의식을 향상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통·반장이 되어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주민이 연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당할 소지가 많고 연임제한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큼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비추어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의 제5조 제4항중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